

3) 기타사항

- 가)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국외 자율연수와 관련된 경비 지원은 없음
- 나)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국외 자율연수는 교원연수·연구실적 학점화 시행 대상이 아님
- 다)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국외 자율연수 기간은 법정 연가일수와 별도 처리하며,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에 실시하여야 함
- 라) 친지방문, 견문목적 등의 단순한 해외 여행은 법정 연가일수 내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업일을 제외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함
- 마) 학기 중에 병가, 특별휴가 등 사실과 다른 휴가를 신청하여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지 않도록 함
- 바)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국외 자율연수의 인정범위(예: 교수학습자료 수집 등)에 속하는 경우 연가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업무처리 지양
- 사) 교원은 여권발급·입국사증의 취득·출입국관리·통관절차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
- 아) 여행기간 중 현지의 규범·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 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함
- 자)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·관폐 등 금지
- 차) 관련 법규 및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학교의 학교장 책임 하에 합리적으로 실시함
- 카) 사례

【사례1】 친지를 방문(10일)하고 이어서 국외자율연수(10일간)를 할 경우 친지 방문을 위한 연가신청을 하고 동시에 국외자율연수 승인절차를 취하여야 함

【사례2】 본인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경우는 특별휴가 기간 내에서 신청함